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2743-2005-000032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 제1층 제1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53	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1층 432.63㎡ 1층 286.88㎡ 2층 286.88㎡ 3층 286.88㎡ 4층 286.88㎡	도로명주소 2018년12월6일 등기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	대	633㎡	2005년1월11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5년1월11일	제1층 제102호	철골조 142.44㎡	구분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에서 이기 도면편철장 제1책 8장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633분의 91.47	2004년12월31일 대지권 2005년1월11일
2			별도등기 있음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			1토지(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 등기) 2005년1월11일
3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05년5월3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3	소유권이전	2017년4월21일 제10708호	2017년4월21일 증여	소유자 김지환 100421-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, 117동601호(반포동, 래미안퍼스티지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0	근저당권설정	2012년5월7일 제14296호	2012년5월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780,000,000원 채무자 김현경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, 15동 1403(신당동, 남산타운아파트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의외환은행 110111-0672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(여의도지점) 공동담보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 제1층 제101호
10-1	10번근저당권변경	2012년5월15일 제15375호	2012년5월15일 변경계약	채권최고액 금720,000,000원

-- 이 하 여 백 --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2743-2005-000032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55-17 제1층 제1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지환 (소유자)	100421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,117동601호(반포동, 래미안퍼스티지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0	근저당권설정	2012년5월7일 제14296호	채권최고액 금78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	김지환
10-1	근저당권변경	2012년5월15일 제15375호	채권최고액 금720,000,000원	김지환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